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5.01.27(화)16:00

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
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월 19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월 20일

3. 제안 이유

- 충북경제자유구역 「충주 에코폴리스 지구」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민·관 합동개발을 위하여,
- 충청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「상법」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가. 회사 명칭 및 사업(안 제3조)

- 회사 명칭과 사업은 정관으로 정함

나. 출자의 방법 및 한도(안 제5조)

- 설립자본금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하며 출자액은 정관으로 정함

다. 주주권 행사(안 제6조)

- 충청북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'은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의 에코폴리스 지구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·관 합동으로 개발하고

자 하는 것으로써 충청북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「상법」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2014년 9월 ‘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’을 충청북도의회에서 원안결의 하였고 이어, 11월에 충주시의회에서도 원안 결의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.